

우리 나라 국악 육성의 문제점과 개선책 (우리 나라 國樂育成的 問題點과 改善策)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鄭 華 永

- | | |
|-----------------------|------------------------|
| 1. 서론 | 가. 학교제도 |
| 1) 국악 육성의 사적(史的) 편모 | 나. 교육과정 개선 |
| 2. 우리 나라 국악육성 현황과 문제점 | 다. 국악교육으로서의 영재교육(英才教育) |
| 1) 학교교육 | 2) 문교행정의 개선점 |
| 가. 대학교육 | 가. 국악교과편수 |
| 나. 중등교육 | 나. 국악교사 양성 |
| 2) 문화재전수교육 | 다. 장기종합교육계획과 국악 |
| 3) 국악 육성행정 | 3) 문화재 및 홍보 행정의 개선점 |
| 가. 문교행정 | 가. 전수(傳授)교육관리 |
| 나. 문화재관리행정 | 나. 중앙 및 지구별 전수원 안 |
| 다. 홍보현황 | 다. 홍보관리 |
| 3. 국악육성 문제점에 대한 제언 | 4. 맺는말 |
| 1) 학교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 |

1. 서 론

민족의 역사가 지속하는 한 그 나뉠의 고유한 문화유산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긴 역사와 더불어 값진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통예술이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전승음악인 국악도 삼국시대부터 이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원형이 인멸되어 그 전승을 보지 못하였음은 애석한 일이다.

여기에는 다변적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보존방법과 육성정책의 부진에 기인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민족문화의 인식을 깊이 가져 이 귀중한 전통음악을 진흥시키고 잃어져 가는 유산들을 보존 발굴하며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존육성에 있어서 과거를 성찰하고 현실을 분석하여 새로운 육성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더욱이나 무형문화재로서의 국악은 유형문화재의 보존관리와는 그 차원이 달리 강구되어야 한다.

이유는 유형문화재는 대상이 형체인 까닭에 원형이 소멸되지 않도록 물리적 관리 방법으로서 가능하지만 무형문화재는 관리대상이 형체가 아닌 공간에 존재하는 무형이니 만큼 물리적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 면을 보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원형이 인멸되지 않도록 전승에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대상이 물체인 까닭에 비교적으로 영속적이며 가변성(可變性)이 적은데 비하여 후자는 대상이 인적 재능이기 때문에 시한(時限)적이며 가변적이다. 따라서 보존육성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며 다양한 연구방법이 전제가 된다.

특히나 국악은 음악 예술인 까닭에 무형이며 자칫하면 그 원형이 인멸되기 쉽다. 그러므로 국악의 육성보존을 위해서는 당면한 국악교육현황과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1) 국악 육성의 사적(史的) 편모

동서를 막론하고 근세 이전의 교육은 특설된 기구에서 강원(講院) 또는 사숙(私塾) 형태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 졌다. 더욱이나 특수분야인 음악에 있어서는 음악 교육은 보잘 것 없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이조를 지배하던 예인(藝人) 하위관(下位觀)은 교육제도의 백지화를 초래하였고 겨우 국가 의례(儀禮)의 필요에 따라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를 두었다. 그리하여 행정기구에 예속시켜 악인(樂人)을 직접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정(市井)에서 수업한 악재(樂才)를 선발함에 쫓겨있었다.

음악인양성의 기능 및 성격을 현대 교육으로 다룬 것은 이조(李朝) 말(末)이었다. 그러나 육성을 위한 제도나 기구는 비교적으로 오래된 통일 신라사회부터 국부적이거나 양성기구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시의 기구들은 순수육성적 기구보다도 행정적 관리기능이 더 작용했다. 따라서 이들 육성기구는 복합적(複合的)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에 역대(歷代) 음악기구를 편모적이거나 살피고저 한다.

<음악서(音樂署)>

신라 진덕왕 5년(651)에 설치하였다 행정상의 소속은 예부(禮部)에 속하였고 장관 2인을 두고 사악(司樂)라 하였다 이음악서는 우리나라역사상 처음 설치한 음악 관장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구는 악제(樂制)연구 악기관리 악인(樂人)교양 등에 이르는 악사(樂事)를 관장하였다.

<대악감(大樂監)>

신라 경덕왕 (742~795) 때 음악서를 개칭한 것이다. 역시 예부(禮部)에 속하였다. 장관 2인을 두어 사악(司樂)이라 하였다. 그 뒤 이 명칭은 신라 혜공왕이 동 악서의 장을 경이라 하였고 내마(奈麻)나 대사(大舍)와 같은 고관직의 사람을 관리책임으로 임명하였다.

<산대색(山臺色)>

고려 열왕 5년 (1279)에 산악백희(散樂百戲)를 관장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음악 관장기구이다. 이것은 연등도감(燃燈都監)과 병합하였다. 산대색을 산대도감 나례도감(儺禮都監)이라고 불리웠다.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6] 에 의하면 고려 정종 6년 (1040)에는 이미 나례에 관한 조서와 봉장이 있었고 예종 11년에는 또 나례에 관한 창우희(倡優戲)가 있었다.

이 기구는 주된 기능이 악인의 관리와 국가 대소행사의 의전기구 구실을 하고 일면에는 음악인 스스로의 사회적 경제적 보장과 악(樂)의 연구기관이었다.

<아악서(雅樂署)>

공양왕 3년 (1391)에 설치하였고 아악에 관한 일을 맡아본 국가기관이었다.

<장악원(掌樂院)>

이조 역대의 왕실악을 관장하던 기관이었다. 국초 (1393)에 고려조의 악제(樂制)를 개편한 것으로 아악서와 장악서를 두었는데 이것이 시발이며 그후 장악서 교방원(敎坊院) 교방사(敎坊

司) 아악부 등으로 변천되었다.

장악원은 종묘제례악과 궁중 연례악 무용 음악 등을 일체 관장하며 일면으로는 악제(樂制) 악리(樂理) 연구와 아악사 양성교육의 성격도 띄고 있었다.

<나례도감(儺禮都監)>

고려조의 산대도감을 개칭하여 나례도감이라 하여 세말의 나례 의식 연례에 쓰이는 가무백회를 관장하던 기구이다. 대개 민속악인의 집약적 상설기구이다. 그러나 나례도감은 이조 인조 이후로는 재인(才人)들의 폐단을 이유로 폐지되고 말았다. 유일한 민간예술기구의 구실을 하던 나례도감의 폐지는 여러가지 음악문화의 변천을 초래하였다.

<신칭 재인청(神廳 才人廳)>

나례 도감이 폐지된 이후 민속악인의 새로운 자체적 기구가 탄생하였으니 이것을 신칭, 재인청 풍류방 등으로 불리웠다. 당시 약세에 놓여 있던 예능인들의 조직기구이며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지부(支部)가 있어 그 방대함은 일즉이 보기 힘들었다. 기능은 각종 예능행사와 음악인의 자질육성과 인화 단결에 의한 경제적 향상이었다. 오히려 관에서는 억제하였고 따라서 이에 저응하는 민속악인은 이 기구를 통하여 오늘에 민속악을 전승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악의 육성기구를 고찰컨데 국가적 기관은 순수 교육적 의도에서 창설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행정적 필요 즉 국가의례를 위하여 설치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부차적인 음악육성도 겸한 이상 오늘날의 음악이 있기까지 그 공헌도는 큰 것이다

대조적으로 민간예능기구인 재인청은 오히려 자의(自意)에 의한 기구이었기 때문에 육성기능이 더 앞섰고 이에 의해서 음악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악육성과정의 시대적 편모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육성에 기구나 제도상의 허실점이 참고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악육성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의 국악육성 현황은 집단적 학교교육과 소수의 전문 교육인 전수교육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과 대중보급을 위한 방송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여 이에 개재된 문제점을 표출하고자 한다.

1) 학교교육

학교교육이란 국악의 기술적 전수만을 위한 문화재로서의 전수교육과는 달리 국악을 순수한 예술 교육과 인문교양교육 과정으로 문교법령에 의거한 정규학교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문교육을 이수시키면서 이에 전통음악인 국악의 악리와 기능을 겸전한 국악 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가. 대학교육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악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는 1959년 대통령령 제 1429호 「국립학교 설치기준령」에 의하여 국립대학으로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를 신설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사립대학으로는 국악과가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다

중등교육과정에 의해 전문적 국악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은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사 양성소가 있다.

다음 국악교육의 학교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경우, 학제(學制)는 일반대학과 같이 4년제로 되어있고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166학점으로 되어 있고 여학생은 160학점으로 되어있다. 남학생이 6학점이 많은 것은 군사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0학

점에서 교양과목인 인문과목과 교직과목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공학점은 100학점에 미달한다.

또한 전공실기는 기악위주가 되어 있고 성악은 가창(歌唱)밖에 없으며 가창도 정악이나 창악 등 전문성을 요하는 과목은 없다 싶히 하다. 양악과는 기악 성악 작곡의 세 분야로 되어 있으면서 국악만은 합병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나 국악은 작곡의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점은 문제가 아닌 수 없다. 이웃 일본이나 자유중국처럼 국악이 생활화되기 위해서 생활정서에 알맞는 신작(新作)이 많이 나와야 한다.

국악이란 고전적 관념에만 집착치 말고 고전은 고전대로 보존 전승시키면서 이 기본 원형을 유도하여 장단 박자라든지 국악이 지닌 요소를 근간으로 한 국악적 작품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악 작곡도 유별(類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자체가 전형악 위주이고 보니 민속악은 제외되고 있다. 국악의 대부분이 민속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다음 표를 보아도 또는 교육현장에 명시하듯이 문화유산으로서의 당 대학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기악곡으로 시나위, 산조, 풍류, 농악가락, 성악으로서 판소리 같은 곡과 기타무곡, 종교음악 등 폭 넓은 강의가 아쉽다. 이와 같은 민속악은 시대적 차이점이나 백안시한 인습도 이제는 버려야 하며 음악적으로 보드라도 구성과 기교는 어느 음악에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다.

한국의 얼이 담겨 있고 순박하면서 따사로운 입김을 느끼며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 예술이기 때문에 더욱 가꾸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국악의 참다운 발전은 민속악의 연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 당국에서 문화재로 보존 육성키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마는 이 방법은 기능전수랑 한계성을 스스로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알찬 육성이란 기능과 악리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최고학부인 음악, 예술대학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다음 정원제를 볼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국악과는 모집정원이 15명으로 되어있다. 국악교육의 최고기관으로 이 학과를 졸업하면 대개 교육계로 진출하고 있다. 국악 진흥과 국민교육이란 과제로 볼 때 앞으로의 음악교육은 국악을 결전한 음악교사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보드라도 각급 학교의 음악교사의 정원수효를 본다며는 현 정원 15명 모집으로 교원 수급계획에 큰 차질이 아닐 수 없다. 같은값이면 중 고등계 학교의 음악교사를 국악과 출신의 음악교사를 배치한다면 1석(石)2조(鳥)격이 아니겠는가. 심지어 문교당국에서는 중등학교 음악과정에 30%라는 국악 교과를 편성해 놓고서도 이를 가르칠 음악교사의 부족으로 그 교과지도는 공백 상태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대학 국악과 정원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국악

※ 음악

지정번호	명 칭	보유자수
1	보태평정대업	17
5	판소리춘향가	6
16	거문고 산조	1
19	선소리산타령	4
20	대금 정악	1
23	가야금산조병창	3
29	서도소리	1

지정번호	명 칭	보유자수
30	가 곡	1
36	판소리심청가	1
41	가 사	1
45	대금산조	1
46	대취타	1
	※ 무 회	
2	양주산대놀이	11
3	꼭두각시놀이	2
6	통영오관대	5
7	고성오관대	8
8	강강술래	3
9	은산별신굿	11
11	농악 12제	2
12	진주 검무	8
13	강릉단오제	3
15	북청 사자놀이	9
17	봉산 탈춤	9
18	동래 야유회	8
21	승전무	4
27	승 무	1
34	강령 탈춤	4
39	치용무	5
40	학 무	1
44	수영야류	8

둘째 국악을 전공한 국악 예술계학교에서 중등교육을 이수한 학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졸업예정자만 하더라도 200명에 가까운 숫자이다. 그렇다면 이들 국악도들은 거의 진학의 길이 막히다 싶히 되었고 또한 각종 학교에 준하는 학교이고 보니 다른대학에 진학도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이는 단지 국악교육이란 분야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교육현장의 본래 취지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라나는 2세를 청년기에서 좌절시키고 마는 결과밖에 안 된다.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당국에서는 국악과 정원이 재검토 되어야 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

나. 중등국악교육

우리 나라 중등교육에서 국악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단 하나의 국악예술학교가 있고 그밖에 국악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악사 양성소가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행하고 있는 각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재육성제도(英才育成制度)와 그 교육의 취지가 흡사하다 하겠다.

① 국악 예술학교

국악 예술학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 국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다. 이 학교는 또 한 문화공보부 위촉으로 문화재 전수강습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국악 가면희, 인형극, 농악, 무용, 국극 등 민속예술 전반에 걸쳐 교육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악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면에서 볼 때 영재교육(gift Education)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금년 들어 제 11회(回)에 이르는 전국 초중등학교 음악교사들이 하기 국악 강습을 문교부 위촉으로 실시하고 있어 국악 중전교사 교육에도 공헌이 크

다.

이러한 국악예술학교는 교육내용에 있어 고등교육제도처럼 학생의 과목별 선택에 있어서 한 학생이 두 가지 이상의 기예를 배우도록 되어 있어 마치 대학처럼 전공 부전공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중학 3년부터 전공 부전공을 선택하여 고등부 졸업시까지 계속 이수토록 되어 있다. 전공 부전공은 기악, 성악, 무용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되도록이면 동일종목의 중복을 피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적성에 알맞는 두가지 종목의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1, 2학년때 전과목을 개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2년 동안에 자신의 적성에 알맞는 과목을 발견하도록 하는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불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11세 ~ 15세 학생의 지향과 자질을 발견하는 시찰과정(視察過程)(cycle d' observation) 과 같은 취지이다.

고등부의 입학자격은 중학교 졸업 동등학력의 소지자인데 만일 타교에서 입학하려는 학생은 1년 동안 역시 적성관찰(適性觀察)기간으로 되어 있고 2년 때부터 전공 부전공으로 선택한다.

교과과정은 주간배당표로 되어 있고 교양인문과목은 일반 인문계 중등학교와 같으며 전공과목인 국악은 10개 과목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지도

여기서 말하는 학습지도란 일반인문과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국악 교육으로서 특히 실기 지도를 다루는 중등국악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역시 실기교육은 많은 문제점이 개재된다. 대학생보다 이해력이 낮은 중고생을 교육 대상으로 하며 양악보다 교재교구가 뒤떨어진 교육이고 보니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것은 국악 교육의 범국가적 문제이기도 하다. 학문적 체계와 고도의 교수법이 요청되며 국악의 중등전문교육에 있어서도 문화재 전수교육처럼 문제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의 경우에는 잘 계획된 Curriculum에 의하여 유능한 교수법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또한 교육방법 자체가 깊은 학리 연구와 응용에 있으나 중등교육은 실기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기능적 습득을 위주로 하는 만큼 여기서는 학습지도에 특별한 방법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교과 운영에 있어 한시간을 45~50분으로 하고 있는데 인문과목의 경우는 알맞는다 하더라도 전문과목인 국악 실기 시간은 너무나 짧아 주어진 교과진도가 나아갈지 의문이다. 2~3인 정도의 학생같으면 몰라도 한 학급단위의 수업은 문제이다. 그것은 예컨대 가야금 실기일 때 출석여부 호명과 연주 가야금 조현(調絃)을 하며는 주어진 45분 한 시간 중 10~15분은 경과하기가 쉽다. 이라고 보면 정미 수업은 30분 정도이니 이를 시정하여 전문과목 시간은 단위제로 하여 90분 수업이 정상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각 학년별 교과진도표에 의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과학적 학습지도가 앞서야 한다. 예컨대 중학교 일년의 가야금 지도에 있어 고등학교 일년생보다 이해와 진도가 앞서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사에 의해서 좌우된다. 충분한 기초교육과 학습지도의 올바른 방법을 쓰는 교사는 처음부터 악기의 취급법, 기초음을 이해시키고 보표의 독해가 이루어진 후 일정 악곡을 보표에 의해서 수업시키니 전수강생이 그 곳을 무난히 습득하였다. 이와 반대로 교육방법의 우둔과 자신의 기능만을 믿고 학습지도에 임한다면 학습을 받는 학생은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해와 진도가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교사의 교육요령과 자신의 교육 수준에 좌우되는 것이다. 후자의 교수법에 의한 학생은 응용력의 부족으로 다른 곡은 타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음(口音)에 의해서 배운 곳은 타지마는 타 악곡을 악보에 의해서 배운 곳은 탈 수 없다는 것이다. 교

육이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하며 기초실력이 있으면 어느 과목이던지 그 분야만큼은 응용이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은 이 응용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다음은 교재의 통일이 이루어져야한다. 기악곡의 경우 A교사의 가락과 B교사의 가락이 각각 다르다. 그 이유는 유파적(流波的) 특징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악곡의 기본적 형식이라든지 접속된 원형이 있는 이상 특유한 잔가락은 그냥 두고 이 원칙적인 것만은 통일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A교사에게 학습받은 악곡은 B교사에게 학습 받을 수 없고 B교사에게 지도 받은 학생은 A교사에게 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전수 기능자의 특징적 기능양성을 위한 전수 교육에는 각 교사 즉 기능 보유자 나름의 교육이 가능하지마는 학교교육이란 집단적인 학습인 만큼 이러한 현상은 부적당하다. 인문 과목의 경우 양악은 어느 음악과 교사가 수업을 하건 전달되는 내용은 교본에 의한 것이니 만큼 동일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표준교재에 의한 학습지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중등학교에 있어서 국악 교육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표준교재의 채택이 선행되어야겠다. 효과적 학습지도는 또한 교구의 시설도 완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 국악 예술학교는 재정난으로 필요로 하는 교구 즉 악기 시청각교구 등이 부족하여 이의 구비가 절실하다.

② 국악사양성소

다음 국악사양성소도 국악예술학교처럼 중등교육기관이다. 국립국악원내에 부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이며 수업연한은 역시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으로 되어있다. 교육과정은 국악 예술 학교와 대동소이하여 인문과목과 국악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역시 중학 1, 2학년까지 적성 관찰 과정을 두어 중 3에 가서 전공을 선택케 하고 있다.

학생모집은 학군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 방면에 소질과 취향이 있는 아동을 전형 선발토록 하고 있다. 모집 정원은 40명이며 전원이 국비 장학생이다.

교육방법이나 교육진도가 국악 예술 학교와 비슷하다.

이상 국악예술계 중등학교의 현황을 보건데 교육의 전문성과 기구(機構)의 특수한 점에서 전문 학교 과정으로 승격되어 국악의 보다 고도의 재능교육을 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구(英才教育 祈求)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재 전수 교육

본장에서 말하는 전수교육이란 지금까지 중요 문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 중 국악 및 국악과 관련된 무용 가면회 등을 포함한 전문적 기능 전수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국악 분야에서 문화재 전수교육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악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가장 예능적 가치성이 큰 것임은 물론, 지정된 기능 보유자는 연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보유자들이 전수하고 있는 교육방법도 역시 과거 그들이 체득한 도제교육(徒弟教育)이나 개별교육의 체제로 되어있다. 따라서 교육내용이라든지 학습방법이 일정한 기준에 의한 교과라든지 계획안이 희소하다. 따라서 몸소 체득한 예능을 구전에 의한 옛 방법을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다.

그 예로서 같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각 기능보유자들은 그 유파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인 악보는 불가능하지마는 각 기능자 스스로가 자기 나름의 교안 즉 전수 교과과정이라든지 교본의 문자화라든지 학습방법의 개선 없이 그때 그때에 따라 임의적이고 계획성이 적은 학습지도로 임하고 있다. 방법도 음악부(音樂符), 문자보(文字譜), 악보, 구음적(口音的) 수법 등으로 교육하고 있으니 그 실정은 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뒤떨어진 교육현상이 아닐 수 없

다. 더욱이나 전수교육은 해당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 기능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영재 교육이니 만큼 보다 전문적이며 합리적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

지금은 시대와 환경이 달라 교육의 방법을 구전(口傳)에 의한 주입식으로는 파행적(跛行的) 교육밖에 안 된다. 예컨대 자신은 명인 명창인데 자신들이 하는 작품 자체의 자구라든지 악곡의 포괄적인 개념을 정히 알아야 하는데 이렇지 못할 경우 그 예술은 올바른 감정표현이라든지 정확한 발은 구사를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방법이 되풀이되면 뜻하는 바의 전수교육이 이루어지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전수교육이 이런 경향으로 답습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개의 보유자들이 완고한 이조사회에서 소외된 예능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지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숭문주의(崇文主義)사상은 농, 공, 상 예술을 등한하게 보았던 모습 때문이다. 또한 개중에는 학문을 한 사람도 있지만 서당식(書堂式) 한문교육이고 보니 현대 교육 방법론에 익숙할 수 없는 것이다. 또는 개화된 신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대개 경제여건이 넉넉지 못하였으므로 초등교육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교육수준의 저하에서 오는 교육지도의 결여가 크게 문제된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에도 문명의 이기를 전수교육에 응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획된 교안에 의한 학습, 슬라이드나 시청각 교재의 이용등을 보조교육으로 삼아야 한다. 현 단계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유자 스스로에 의한 현대적 교육운영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당국의 적극 관여가 요청되며 전수 주체교육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 전수교육은 전수일지 제시나 가끔 있는 연중발표회정도로써 결과를 측정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미온적인 전수교육이 올바른 평가가 될는지 의문이다.

다음은 피전수생의 선정문제이다. 현재 피 전수생들은 일정하나 선발 규정에 의한 적성자선발이 아니고 기능보유자 즉 전수강사 자신들이 임의 차출하였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많다. 말하자면 연고관계에 의한 선발이 되어 연고자가 다행이 적성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전수강사는 전수생의 물색에 골몰하는 수도 있다. 전수교육은 두말할 것 없이 피 전수생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전수교육은 두말할 것 없이 피 전수생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전수교육은 계속적 교육이 행해져야하는데도 피전수자만 잦은 갱신은 전수교육 그 자체에도 중대한 문제가 된다. 전문적인 예능교육이 전제되는 전수 교육에 있어서는 피 전수자의 적성타당도(適性妥當度)가 절대로 중요하다. 즉 천분의 자질, 성별, 체형 등이 전제가 된다. 전수교육은 영재교육으로서 인간의 재능적 적성발견이 중요하므로 전수교육에 있어서는 피전수자 선정에 있어 능력별 검정제가 필요하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특수 분야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을 많이 실시하며 특히 예술교육에 적합하다. 이때 능력별 검정제가 있는데, 이방법으로 길 포드 (Guilford, J.P)나 토-란스(Torrance, E.P)에 의하여 많이 시도되고 있다.

전수 교육은 피전수자의 개성적 천분을 육성시켜 주는 각 분야별에 의한 연령, 성별, 적성도를 고려하여 피전수생으로 선정해야한다.

인간의 생명은 한도가 있는 것이며 귀중한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자들은 대개가 나이가 많아 그 중에는 일부 보유자는 계속 살아져 가고 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어느 정도 후배에게 물려주었는지 모르겠다. 다행히 완전전수가 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당국에서는 원형보존에 주력하여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보전을 한다지 마는 그 기록이나 자료로서 소기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기록이나 자료에 의한 방법은 제 2 차 적인 전수 형태인데다가 그 교묘하고 변화 많은

음곡이나 동작표현은 현존 기능자의 직접 교육이 아니고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후계양성이 없고 당사자가 사고시는 지정을 해제하면 끝나지마는 만일 그 전승이 안되었을 때는 국가적으로 하나의 문화재가 인멸되고 말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문화재 전수교육이 잘 이루어져야되겠다.

3) 국악육성행정

국악 육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구현이 곧 육성행정이다. 이에는 문교행정으로서는 각급 학교의 국악 교과과정과 육성기구로서 학교제도를 들 수 있고, 문화관리 및 공보행정으로서는 문화재로 지정 육성되는 전수관리와 홍보현황을 들 수 있다.

가. 문교 행정

교과과정

① 국민학교

현행 국민학교 음악교과과정에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아래 표와 같이 총 163곡 가운데 참고곡과 감상곡을 합하여 민요가 12곡으로 그 비율은 불과 8%에 불과하며 양각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국민학교 음악교과서 국악통계

학년	구분	총곡수	민요조	서 양 조	
				2박계열	3박계열
1		24		22	2
2		29		19	10
3		27		16	11
4		27	3	14	13
5		29	2 참고곡 (3)	17	12
6		27	1 강상곡 (3)	10	17

더구나 우리 민요곡은 1, 2, 3 학년에는 전혀 없고 4, 5, 6 학년에만 나와 있어 학년별 전체 곡 수의 비는 4학년이 1%, 5학년이 0.3% 6학년이 0.3%로 되어있다.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린 소년기부터 그 나라 음악이 생활 정서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오히려 양악곡이 92%란 전체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국민학교 음악교육 행정의 큰 차질이 아닐 수 없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니 만큼 더욱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당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 자신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유는 교재 편찬위원회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사계(斯界)의 학자나 실무자들이 등한하였고 일면 재료 제공의 빈곤에도 기인한다.

또한 국민학교 교육과정에 국악을 많은 비율로 편성했을 때 과연 그 과정을 교육시킬 수 있는 지도 문제다. 현 국민학교 교사들은 1일 8교과목을 다루는 전담제도 아래서 국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개편 되어야지만 등달아서 국악지도에 임하는 교원 자질도 크게 크로즈옴 된다.

② 중등학교

중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양악대 국악의 비율은 국악이 30%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국민학교에 비하면 많은 폭이지만 중등학교 음악과정으로서는 부족하다.

1969년 9월 4일 문교부령 제 251호가 개정 공포되고 1970년도부터 시행에 옮겨진 교육과정령 중 개정령에 의하면 학습목표로서 피교육자들의 적성과 자질을 최대한도로 신장 발전시켜 주는 뜻에서 가창, 감상, 기악, 창작의 4개 표현학습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에서 가창은 30%이상의 곡조는 우리 나라의 가곡과 민요 부르기로 충당되어 있으나 이 가곡이라 함은 순수국악이 아닌 국악류의 서양 음악을 뜻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30%도 되지 않는 민요의 삽입으로는 부족하며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보다 많은 우리의 민요, 시조, 단가 등을 반영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율만 30%이지 기실 국악이란 전승음악은 훨씬 미급하다.

감상 학습도 전통음악을 말하는지 어떤 악기의 연주곡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단원은 그 목표, 방법, 내용이 분명해야한다. 그래서 현 이 단원(單元)은 한계점이 모호하다.

기악학습도 일단 국악인 이상 국악기로서 연주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악기는 실로폰과 오르간으로 되어 있으니 국악의 실감이 느껴지겠는지는 의문이다. 두말할 것 없이 국악기로 대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교구 설비 기준령에 15학급 이상의 학교에 국악기가 설비되어야 하며 그 미달 학교는 자의에 의하니 위선 악기불실로서도 실시 여부가 문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역시 교사들의 국악교육수준과 이해도가 야기되어진다. 실제 국악과 출신 음악교사가 몇 명이겠느냐 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음대국악과 졸업생이 15명이고 보면 과히 알 것이다. 그러니 교원수급(敎員需給)이 시급하다.

다음 교구시설 기준령을 볼 것 같으면 아래 표와 같다.

중학교 교구설비 기준령

구 분	교 구 명	학 급 별 소 요 수 량						
		3	6	9	12	15	18	19
건반악기	피아노 또는 울건	1	2	3	4	5	6	7
현악기	바이올린					1	1	1
	비올라					1	1	1
	첼로					1	1	1
	더블베이스					1	1	1
관악기	플루이트					1	1	1
	클라리넷					1	1	1
	오보에					1	1	1
	호른					1	1	1
	트럼펫					1	1	1
	트롬본					1	1	1

구 분	교 구 명	학 급 별 소 요 수 량						
		3	6	9	12	15	18	19
타악기	댐 버 린	5	5	5	5	10	10	10
	트라이앵글	5	5	5	5	10	10	10
	캐스타네츠	5	5	5	5	10	10	10
	실 로 폰	5	5	5	5	10	10	10
	큰 북	1	1	1	1	1	1	1
	작 은 북	2	2	2	2	4	4	4
	실 별 츠	1	1	1	1	2	2	2
국악기	거 문 고					1	1	1
	가 야 금					1	1	1
	아 쟁 금					1	1	1
	해 양 금					1	1	1
	대 금					1	1	1
	피 리					1	1	1
	당 적					1	1	1
	통 소					1	1	1
	단 소					1	1	1
	태 평 소					1	1	1
	생 향 고					1	1	1
장 박					1	1	1	
기 타	전 축					1	1	1
	녹 음 기					1	1	1
	메트로놈	1	1	1	1	2	2	2
	어코오디언	1	1	1	2	2	3	3
	벨 지 휘 봉	1	1	1	1	1	2	2

위 표와 같이 중학교 교구설비기준령에 의하면 국악기는 15학급이상이 되는 학교에 갖추도록 되어 있다. 양악기는 학급의 다과를 막론하고 올겐을 위시하여 각종 악기를 갖추게 하면서 국악기는 15학급이 넘어야 가야금 거문고 등을 갖추게 하니 우리 나라 실정으로 농산어촌에 있는 중학교가 15학급 이상되는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다. 그렇다며는 수 천년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악기가 이러한 학군(學群)에서는 그림자도 못 보는 것이다. 학급 수에 제한을 두어 국악기를 갖추게 함은 큰 모순이다.

교육현장에도 밝혀 있듯이 겨례의 주체의식과 슬기로운 조상의 얼을 되새겨 전하여 오는 문화 유산을 애호 육성 할 것을 제창하였는데 겨례 음악을 숭상하고 보급시켜야할 학교교육 목표에서나 교육현장의 취지에서도 의례히 갖추어야한다. 단 1학급일 경우라도 얼마 안 되는 국악기 만은 갖추어야 한다. 음악교육의 주(主)된 교구인 국악기의 갖추도 없이 음악교육에 어찌 국악 과정이 형식이라도 이루어지겠는가 한다.

나의 것을 갖추고 남의 것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일반화된 양악기라 할지라도 어디 까지나 우리의 고유악기는 국악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선 없이는 국악교육은 허구의 교육 이 되고 만다. 빨리 동 기준령을 개선하여 전국 각급 학교에 국악기 설비를 규정해야할 것이다.

③ 학교제도

우리 나라 학교제도는 교육법 제 111조에 의하여 대학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률

적으로 단선형(單線形)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하여 진학조건이 엄격하다. 예외로 2년제 교육대학이나 5년제 산업계 고등전문학교가 있으나 이도 또한 연한에 의한 진학이라든지 졸업이 규제되어 있다.

외국의 예를 들면 특히 국악과 같은 예술계 영재를 육성하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컨살바도르(conservatoire)의 규정을 보며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등의 학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입학연령은 10~19세로 되어 있고 재적기간도 3~5개년으로 각 전공과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또한 정해진 수업연한 일지라도 성적(콩쿨에 의하여 상을 받는 것)에 의하여 2년 3년이라도 졸업할 수 있다. 또 그 코스를 마치며는 연달아 다른 코스를 배울 수 있다. 또 이태리의 산타체제리리아 음악학원(Academia di Santa Cecilia) 규정을 보면 역시 최저 12세에서 최고 20세 까지 입학이 허가되며 각 전공분야별로 조금씩 다르나 아주 자유롭게 되어 있다. 입학시험도 꽤 다양적이어서 나이 어린 연소자에 대하여는 그 나이에 알맞는 과제로서 연령별 시험제도를 채택하여 재학기간도 전문분야별로 정해져 있다.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표준 연령이나 기간이 안되어서도 졸업시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고 다양한 제도는 프랑스나 이태리나 또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재능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풍부한 음악적 천분을 가진 아동 소년에 대하여 그 천분을 신장키 위한 가장 최적한 교육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은 음악가로서 뿐만 아니라 음악교사로서의 양성도 겸해 있어 인격교육을 위한 인문교양과목도 반드시 이수한다. 그리하여 주과, 부과를 두어 거기에 일반과목과 교육과목을 실시한다.

우리 나라에는 이와 같은 국가적 제도는 없으나 국악교육이 조기교육을 필요로 하며 또한 영재 교육에는 보다 좋은 교육자가 필요함에 비추어 이러한 양성제도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무용 등 예능계는 거의 이러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예술에 관한 교육제도도 장구한 전통을 가져 그 나름의 각 전문분야의 특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으나 또 불충분하게 생각되는 점은 사회 교육적 방법에 의하여 보충되도록 연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단선형 및 학년 위주의 학제이고 보니 중등과정에서 예술계 학과가 있지마는 교육의 중심은 아무래도 예술관계의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전기교육법 대학 설치 기준령등의 법률에 의하여 전문분야의 여하에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입학 수업연한 등이 규정되어 있어 천재건 아니건 소정연한을 거쳐야하니 그만큼, 영재 육성이 늦어지는 것이다.

학문도 인문계나 예술계는 교과편성 및 지도상 이미 차이가 있고 보면 구분이 없는 동일 교육법 조문이나 기준으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개재한다. 현 우리 나라 예술관계를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서울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이 있으나 대학규정은 일률적으로 교육법 111조에 규정한 고등학교의 학력을 규정하고 있어 비단 예술계통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연령도 12~20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연령제한이 없으며 입학자격도 중요한 학력도 특별제한이 없다. 중등교육을 받지 않은 자라도 적의의 시험을 거쳐 입학시키는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한 진보적 교육제도가 요망되어진다.

물론 우리 나라도 예능 체육계통의 대학진학은 교육법 111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 예비고사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그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력이수연한은 동일 적용을 받고 있어 전문성과 영재육성을 위한 예술교육의 취지에서 볼 때는 시기라든지 제

도 운영상의 애로가 있을지 모르나 학력구제의 간이한 제도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자유중국처럼 국악을 위한 전문학교의 설립이라든지 사립대학에서의 국악학과 설치라든지 폭 넓고 다양성 있는 학교제도가 구현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균등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6, 3, 3, 4제이다. 이것은 종래의 2개의 학교 체제를 이론화한 단선형 학교 제도이다. 이 학교 제도라는 것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상응한 밀도 높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6, 3제는 극히 획일적인 교육을 향하고 있어 최근 각 방면에서 비판되고 있다. 확실히 이 학제는 제도 면에 있어서도 운영 면에 있어서도 탄력성을 결하고 있다.

먼저 제도 면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계적인 학년 진급제도이다. 말하자면 유년이나 낙제나 월반도 인정 안되는 진급제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잘하거나 못하는 학생도 365일 이면 전원 자동적으로 상급학년에 진학된다. 어째서 이런 것이 있느냐 하면 특히 의무교육의 수업연한이 연령으로 억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96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 된 익일 이후의 최초 학기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 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연령주의 교육으로는 특수교육은 물론 영재교육도 될 수 없다. 앞으로의 학제 개편은 사회적 요청과 아동의 심신 발달과 특히 능력개발의 견지에서 청소년기의 교육을 분단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연령주의로 하지 말고 능력이나 업적에 의한 탄력적, 진급제도를 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급으로 둔다든지 월반 촉진 학습 등 제종의 조치가 취하게 되는 것이다.

나. 문화재관리행정

문화재 관리행정이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수관리 행정을 여기서는 뜻한다.

다시 말하면 문화재 전수행정으로써 문화재 육성기구 급 육성비 보조 현황을 분석하고 그 고찰대상으로 국악뿐만 아니라 국악과 직접 연관된 무형문화재인 탈춤 무용 등도 같이 다루었다.

① 전수기구현황

우리 나라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국악 또는 민속놀이 무도 등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은 국가기관이나 공공적 단체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치 않고 지정기능 보유자의 소속지역 단체나 법인에게 이관 양성시키고 있다. 이것은 전수주체행정관리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보유자들이나 소속단체들이 근래 상당한 변동을 주고 있다.

전수기구 현황

지정번호	명 칭	69년도위촉전수기구명	70년도 이후 전수기구명
5	판소리춘향가	국악예술학교	국악예술학교
16	거문고 산조	국악예술학교	"
23	가야금 산조	"	"
3	꼭두각시놀이	국악예술학교 한국연극연구원	민속극희남사당
2	양주산대놀이	국악예술학교 한국연극연구원	양주산대보전회
15	북청사자놀이	"	한국가면극연구회
19	선소리산타령	무형문화재연구원	선소리산타령 연구회
17	봉산탈춤	한국연극연구원	한국가면극연구회

지정번호	명 칭	69년도위촉전수기구명	70년도 이후 전수기구명
6	통영오광대놀이	동영고등학교	충무무형문화재보전협회
7	고성오광대놀이	고성농업고등학교	고성오광대연수회
12	진주 검무	진주문화원	진수민속예술보전회
11	진주농악12재	"	"
18	동래야유회	원예고등학교	부산민속예술보존회
21	승 전 무	통영여자고등학교	충무무형문화재보전협회
13	강릉단오제	강릉여자고등학교	

위 표를 볼 것 같으며는 69년도 전수기구가 70년도 이후의 전수기구와 대조할 것 같으면 기구개편이 대조적임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같은 분야는 통합을 하고 일반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실시하던 것을 일반 문화단체로 이관되어 일반 사회인으로써 전수대상을 옮기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전수생의 갱질이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구의 변경은 물론 지방사정이나 전수자의 제 여건에서 고려된 점도 있겠지만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란 대의 밑에서 생각할 때 전수기구의 관리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행정관리요원의 부족도 있겠지마는 적어도 주기적 직접관리는 행해져야 한다. 다행히 전수기구나 예술교육기관이거나 당해분야에 조예와 성의가 있는 기구일 때는 몰라도 그렇지 못하는 사적(私的)단체나 개인인 경우에는 전수교육은 유명무실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전수 기능자는 교육의 원리나 학습지도 방법의 결여로 효과적 교육은 기대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조언 지도를 요하는 직접적 관계 내지는 관찰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수기구는 당국의 행정적 구도하에 중앙과 지방별로 유기적인 조직기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② 육성보조 현황

효율적인 보조비의 지급은 그만큼 전수교육을 향상시킨다. 과거나 현대나 우리 나라 국악 예술인은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 언제나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2세는 되도록이며 자기가 걸어온 예술 계통을 피하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는 그의 전반생을 생활난에 허덕이었고 독창적인 천부(天賦)를 가질수록 일가견이 될 때까지 고투해야한다는 공산이 크며 실제로 가정생활의 고경에 의하여 예술에의 깊은 연구 내지 예도(藝道)에 정진 못하고 있다. 전수교육도 역시 보유자나 피전수자에 대한 계속적이고 확고한 경제적 대책 없이는 소기의 보조사업을 이루기 힘들다. 70년도에 비하여 71년도에는 예능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종전에 60세 이상의 자에게 월 7,000원 60세 이하의자에게 1년에 20,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71년도부터는 50세 이상의 자에게는 월 20,000원 50세 이하의 자에게는 1년에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었다. 이것은 획기적인 육성비의 개선이며 종전에 지급하던 비율에 비하여는 3배 내지 5배로 인상된 셈이다. 그리고 보유자가 극도의 생활위협을 받을 때 또는 신병치료를 하도록 생계비와 치료비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 그때에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예산관계도 있겠지마는 현 보조금 제도는 완전보장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보조제도이지만 앞으로는 보유자들이 더욱 생활 안정을 갖은 가운데 전수교육에 임하도록 연차적 증액이 뒤따라리라고 생각한다.

다. 홍보현황

현 우리 나라 홍보현황은 라디오 방송국이 국영중중양방송과 민영으로 문화, 동양, 동아, 기독교, 미8군, 방송 등이 있고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국영중양방송, 민영으로 동양, 문화방송, 미8군 방송국 등이 있다. 선진 외국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숫자이다. 이웃 일본은 1967년도 현재 라디

오방송국이 국영이 2국, 사영이 46 개사, 텔레비방송국도 국영이 2개국과 민영이 46개사로 수신계약 등록수만도 19,334,075란 엄청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Masscom의 발달은 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발 정도에 의하나 우리나라도 급격한 경제발전 교육향상 사회구조의 변천, 생활구조의 변화 등은 Masscom 발달에 박차를 가하였다.

Masscom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기회균등과 교육의 사회화와 가정생활의 혁신을 초래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Masscom은 강당교육을 넘어선 기천기십만의 대량 교육으로 학술지식을 주입시켜 국민상식을 배양발달 시키는 것은 종래의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던 일대진보를 던져 주었다. 이와 같이 Masscom은 대중생활과 생활 필수방편이 되어 있어 현대사회는 분명 Mass Society 이며 대중사회의 모든 문화가 이에 의해 전달 보급되고 있으므로 Masscom에 의한 국악 교육은 교실교육이상으로 중요하다. 우리 나라 Masscom이 담당하는 국악방송현황은 전체방송프로에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로 지극히 낮은 분비를 보이고 있다. 민영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국영방송도 3%에 불과하다. 자유중국이나 일본은 매일 음악이나 극을 통하여 방송하고 있고 국민 전체의 일상 생활에 젖도록 홍보정책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홍보행정에서도 너무나 국악이 등한시 되어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체의식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자체에 더욱이나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우리의 일을 찾기 위해서는 생활과 가장 가까운 음악예술부터 정화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에서는 우선 국영만이라도 개선과 방향제시가 시급히 시정되어야하겠나. 그러지 못하고서는 국악과 문화재 육성정책의 정상화는 물론 국민사상의 올바른 확립마저 요원하리라 생각된다.

3. 국악육성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상으로 논설한 우리 나라 국악의 육성현황에 있어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근대에 와서 모든 나라에서는 과학의 각 분야에 알맞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학교제도와 교육과정의 개편은 시대적 요청과 일국의 교육개혁에 의하여 적의(適宜) 추진되고 있다.

각국의 과학 경쟁이나 증대하는 인구와 이에 대응하는 교육제도가 이루어져 각 분야별의 Elite양성을 위한 영재 육성제도가 채택 실시되고 있다.

국악 육성에 있어서도 그 증추가 되고 있는 교육기구 및 교육과정의 개편은 직접적인 국악육성의 관건이 된다. 다행히 우리 나라도 1970년도에 장기종합 교육계획안이 마련되어 1차 시안 토의가 끝나고 1970년과 7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72년도부터 개혁 시행단계에 들어가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것은 장기교육 계획에서 논하고 줄인다.

가. 학교제도

우리 나라의 국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는 하나의 음악대학과 두 개의 중등학교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국립대학에서는 모집 정원이 불과 15명이나 얼마만큼 국악교육이 과소 평가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말로만 민족 음악이니 선대문화 유산이니 하지마는 막상 보존 육성해야 할 중심적 위치에 있는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나 경시되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의 경우 자유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악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가.

국립대학은 물론 각급 전문학교에서 국악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것은 그 그만큼

주체의식을 갖인 교육정책이요 제도화 된 상증인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국악은 일반 사설학원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비교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가르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능위주의 비정상적 교육이 실시되어 있으므로 국악은 향상보다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였고 동시에 사회로부터 등한시 당하고 있으니 올바른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참다운 국악육성은 학교제도의 개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현황에서 논한 것과 같이 학교제도(설치기준, 정원 입학규정)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하여 일로 증가하고 있는 국악학도의 취학과 이의 교육을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악과 15명의 정원은 중등교육을 마치고 입학하고자 하는 국악 지망생의 진로를 밀폐하는 결과 밖에 안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각 국립대학에는 적어도 음악대학내에 국악과를 두어야 하며,

둘째, 입학자격도 일반 인문계와는 달리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완화되어야 하고, 또한 교육제도로써 전문학교가 빨리 설치되어야한다. 현재 있는 실업 고등전문학교나 1970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전문학교가 교육법 12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등 전문학교는 산업교육으로 한정하였고 동법 128조 6항에서 9항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학교는 입학규정이나 설치기준령이 까다로와 조기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악교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영재 육성제도처럼 전문분야의 특질을 살리 수 있도록 입학 연령, 학력, 수업연한. 교육과정을 알맞게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학교는

첫째 현 국립대학 국악과를 성악, 기악, 작곡과 별로 분류하여 신설 또는 증원 하여야 하며 장차 중견 중등음악교사와 연구가를 양성하고,

둘째, 초등음악교사 및 국악실기인을 양성키 위하여 현 실업계 고등전문학교와 같이 중학을 마친 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가 수확할 수 있는 5년제 국악 예술 전문학교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교육과정 개선

현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악과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국악은 분명히 성악, 기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얼마든지 창작할 수 있는 바, 작곡과도 중요하다. 국악이 시대감과 자꾸 거리를 가지는 것도 창작의 빈곤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보아서도 파행적 교육과정은 시정되어야 하겠다. 또한 민속 음악 분야에 대한 교과편성이 희소한 상태이니 이도 증보 개편되어야 한다.

국악은 민속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며 더욱이나 광범위한 Curriculum을 편성하여야 할 국립대학에서의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육이념과 상치되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 나라나 일본 등지에서만이 있는 과거 외래음악의 전래에 의해서 기인한 현상이라 하겠다.

둘째, 국악을 학습시키는 국악 예술학교나 국악사 양성소의 국악교육은 현재 학년제에 의하고 있으나 전문교육의 성질상 대학과 같이 단위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수업시간도 45~50분을 90~100분으로 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황에서 말한바와 같이 악기조정, 실기지도의 수업시간으로써 적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만일 전문학교가 설립된다면 전문학교과정에는 교양과목, 교직과목과 전공과별(기악, 성악, 작곡, 무용, 국극, 민속, 공예)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중국에서는 국극이 대단히 성하여 국극에 관한 전문학교만도 주요한 것이 3개교나 있다.

넷째, 학교별 교구 설치 기준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15학급 이상되는 학교

에 한해서 국악기를 비치한다는 것은 일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국민 개창을 부르짖어야 할 차제에 국악육성의 핵심기관인 학교에서 학급수에 기준을 두었다 함은 국악교육의 이율배반을 노출하고 있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체(교사)객체(학생)재료의 3요소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중등학교에서는 30%의 국악 교과 과정이 음악 Curriculum에 배당되어 있는데 학급이 적다하여 국악기를 비치하지 않고 행하는 교육은 교육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도 교구시설로 시청각 교육이나 실험교육이 지지한 상태인데 특히 음악교육은 악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국악기의 설비제한은 국악교육의 허탈을 거듭할 뿐이다.

시급히 동 기준령을 개정하여 각급 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도 비치되어야 한다.

다. 국악교육으로서의 영재교육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영국, 구라파 등지에서 최근의 교육 동향을 개관하면 각국의 공통적인 경향의 하나로써 개개아동의 생산의 적성 능력개발과 육성의 중요성이 극히 중시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고도한 발전, 특히 우주과학경쟁의 격화나 또는 산업, 교육,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요구되는 고급 Man Power 부족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제국은 영재 육성을 위한 특별교육이 새로운 방법하에서 모색되고 있다. 국악 예술도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재, 전수교육에 있어서도 영재교육제도가 필수적이다.

영재교육은 아동의 능력에 알맞는 교육을 하며 떨어진 아동은 끌어올리고 앞질러 가는 아동에게는 재능을 충분히 신장시켜 주는 능력별 교육을 말한다.

능력별이란 차별과 다르며 한 개인별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주는 것이다. 영재교육은 모든 학문분야에 적용되며 특히 예술교육분야에 있어서는 불가결의 교육제도이다. 왜냐하면 예술적 자질이 천분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은 영재육성제도가 가장 타당하기 때문이다.

현황에서 말한바와 같이 국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의 육성에 알맞은 전문제도 급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교육은 상술한 국악영재를 육성할 수 있는 영재교육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입학제도 교육과정을 이에 알맞게끔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제도

현 우리 나라 교육법 시행령은 단선형(單線形) 교육이며 6, 3, 3, 4 의 학교제도 인바 어디까지나 교육법에 의거하여 입학 자격요건이 법정화되어 있다.

원래 예술의 재능은 가장 빨리 나타나는 바 대개의 경우 10~15세로 보고 이 적절기에 알맞는 국악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재 전수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제도에 의한 교육도 이 시기가 알맞는다. 미국이나 서구제국처럼 예술적 영재를 발탁하여 엄격한 학령에 구애되지 않고 각 음악예술의 부분에 적의한 학령이 인정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영재교육의 유형(類型)으로써 다양하고 다종한 교과가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수업연수도 일률적 제도를 벗어나서 알맞는 부분별 수업연수가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재육성 목적을 위하여 국악예술전문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며 그 개요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코져한다.

입학연령 및 수업연한

전 공 별	수험연령	제적기간	비 고
현 악	12~13	5개년까지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관 악	12~15	"	대금, 피리, 단소
성 악	12~15	"	판소리, 가곡, 가사, 시조, 민요
무 용	12~13	"	고전무
작 곡	15~18	"	국악창작, 국악이론
이 론			

입학 연령을 12세로 한 것은 현행 우리 나라 초등의무교육의 완성 연령이 12세이기 때문이다. 외국처럼 월반제도가 잘 인정 안되는 현실에 있어 부득히 한 일이다. 현악이나 판소리, 무용 같은 것은 10세 이전의 아동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으며 관악(管樂)은 12~15세로 현악보다 조금 늦은 이유는 그만큼 관악은 폐활량이 많아야하기 때문에 너무 이르면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관악은 되도록 남아가 적당하다. 그 이유는 폐활량이 여자보다 남자가 강하기 때문이다. 작곡 이론은 충분한 정서 발달과 기초적 악리와 실기를 쌓은 후가 적절하기 때문에 15세 이후의 학령으로 한 것이다.

입학시험(재능시험)은 각 연령에 알맞는 연령별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국악교육과정 설정에 있어서는 아래 표와 같다.

국 악 교 육 과 정 표

과 별	전공과별	부전공과별	교양필수	교직과목
현악과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비파 중 택일	우(右)전문과목 외에하나택일	음악이론(국,양악) 인문과목(이공제외)	교육학
관악과	대금, 피리, 단소, 호적 중 택일	상 동	"	"
성악과	판소리, 가곡, 가사, 시조, 민요 중 택일	상 동	"	"
작곡과	고전, 창작	없 음	기악실기	"
무용과	고전무, 민요무, 창작무	상 동	무용에 관한 이론 인문과목(이공제외)	"

위 교육과정 설정은 기악부에 현악, 관악으로 구분하고 성악과 작곡 무용과를 두고 이를 각 전공 나열 과목중 한 과목을 택하여 전공 과목 중에서 전공 과목으로 택일한 과목 외에부전공을 갖도록 한다.

교양 필수과목은 국어, 사회, 외국어와 국악 이론으로써 국악개론, 국악사, 악리, 악기론, 예술론, 과별 국악각론과 교사자격 취득 교직과목으로 교육학, 14~2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교육학점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 22조 3에 의하면

「교직 과정의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전향의 교직과정에서 20학점 이상을 취득한다. 다만 초급대학 간호학교의 교직과정 학점은 14학점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다.

작곡과나 무용과는 부전공이 필요 없다.

이 Curriculum은 5년제 전문학교 과정인바 1학년 때에는 자기 적성을 살려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겠끔 소위 진로 과정 관찰기를 둔다. 이 관찰기간 동안 아동자신은 물론 교사도 그 아동의 적성을 영재 선정기준에 의하여 잘 파악해야한다.

교직과목 14~20학점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음악교사의 자격취득 요건이며 중등교원을 희망

코저 할 때는 대학 음악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토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 전문교에서 2년 정도의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때의 이수과목은 전공과목과 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학과 종합 악리(국,양악)를 취득하도록 한다. 이때에 주의할 것은 전문 5년간의 교육과정의 연계성(連繫性)을 그대로 갖도록 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중등교원을 위한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재교육은 질적으로 우수하고 능력있는 국악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고, 또 부족한 현 국악교사 양성과도 직접적 관련을 갖는다.

2) 문교행정의 개선점

교육정책 및 행정은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국악육성의 정책적 구현으로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악교과 편수와 교사양성 및 장기종합 교육계획의 3항목으로 나누어 그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국악교과 편수

앞서 현황에서 본바와 같이 국민학교의 경우는 전체 음악교과의 8% 중등학교의 경우는 30%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국민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초등교육은 국가에 의해서 교육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정책의 중심이기도 하다. 6~12세에 이르는 아동은 가장 환경과 사물에 민감하며 교육의 구현여하에 따라 지적 정서적 육성이 좌우된다.

이웃 자유중국이나 일본 등은 자기 나라 음악을 피부에 느끼고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부터 정책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에 국악이 그것마저 4학년부터 교과서에 편수되고 있으니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 사실 전체 음악편성 비율의 8%란 있으나 마나다. 앞으로는 음악교과 편수시에 국민학교는 최저 30%, 중등학교는 50%는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교과편성은 국악중심의 음악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나. 국악교사 양성

교육은 교육주체인 교사문제가 중대함을 말할 것도 없다. 그릇된 교육은 교육이 없었던 것보다 못한 것이다.

오늘날 국악 진흥을 부르짖고 국악교육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교사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나 교과편성에 있어서 국악이 많이 반영된다면 각급 학교의 국악교사의 양성이 문제화 안될 수 없다. 초등교육의 경우 학급담임제에 의한 교육운영은 좋으나 1인의 담임이 전과목을 가를치는 것은 재고될 문제다. 사실 국악은 일반 교사의 지식으로는 소기의 목표달성이 힘들다. 그러므로 음악 중에서도 국악만큼은 독립될 전문교사가 요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교사양성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있어서 각 국립대학의 국악과 내지 사립대학 음악과에 단기 국악교사 양성과정을 두어 연차적으로 보충하는 방법과 기존 음악교사에게 국악강습을 강화시켜 국악 이론과 실기를 습득케 하는 수밖에 없다.

장기 안목으로는 국악 전문학교의설립과 교육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초 중학의 국악교사의 보직을 행하고 당면문제로서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음악과에서 국악 교사를 배출하여 고등학교 내지 전문기구에 보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악교육을 위한 교사양성기관의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 장기 종합 교육계획과 국악

교육계획의 요청에는 교육정책의 목적을 교육제도의 종합화 사회 경제적 요청으로 볼 수 있

다.

이 중에서도 교육정책의 목적과 사명으로서 볼 때

첫째는 자기발전 향상을 바라는 국민 개개의 교육적 요구에 있고

둘째는 국가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있다. 제 1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 적성능력에 맞는 교육기회를 주며 제 2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발전의 여러 가지 요인, 단지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말고 학문예술 등 넓은 문화의 제 영역과 사회공공부문에 대한 각 분야의 요청에서 교육계획이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교육계획의 시안(試案)을 볼 것 같으면 산업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분야로서 국악교육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동 계획에서도 국제사회의 축소와 고도의 과학화와 국제교류로 한국의 Image를 언급하였다

「민족의 주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곳에 민족문화 민족예술은 성립될 수 없다」 사실 세계 속의 한국을 찾고 국민 정서의 함양을 위해서는 국악교육이 중대치 않을 수 없다. 국악은 일상생활문화로서 접촉이 가장 용이하고, 또한 전통예술로 한국적 Image가 생동하고 있는 것이 국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악은 민족 문화로 장기종합교육계획에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한다.

우리 나라 장기종합교육계획은 1968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 3651호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가 구성되므로써 한국교육의 미래상을 부각하여 「교육발전이 경제발전 정치발전 사회발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하여 그 발전과 쇠퇴의 방향을 장기적 전망과 종합적 견지에서 투시하게 되었다」(교육계획 요약 제 1차 시안 머리말)

그리하여 1970년 4월 1일부터 동 시안을 심의하고 10여회에 이르는 Seminar를 가졌으며 1970년과 1971년을 준비기간으로 하고 1972년을 계획 시발년도로 하여 1986년까지 15년간을 3기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국악교육을 동 계획의 주요내용 13개항 중 상관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학제
2. 교원의 확보와 자질향상
3. 교육과정 개선
4. 대학 및 대학원의 강화
5. 사회교육체계의 강화
6. 해외교육의 발전

이상 6개 항목과 관련지어 국악교육의 장기종합교육계획에 요약하여 말하고자 한다.

① 학제

동 계획시안에 보면

「6, 3, 3, 4 기간 학제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 본 계획에서는 현 기간학제에 근본적 결함은 없다고 보며 학제개편 대안에 관한 합의도 없음에 비추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현 학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첩명하였다.

이 학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확대 내지 교육의 양적 확대에는 큰 공헌을 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반면 교육내용과 적성지도면에서 있어서는 영재육성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하였다. 6, 3, 3, 4의 학교체제는 학력편중과 더부러 중학 3년 고등학교 3년 종료후의 2차에 이르는 과열화된 진학 경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체제가 진학을 위한 예비교화되어 교육편중의 학교경쟁이 되어 인간형성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 점에 있어 근본

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 분야만큼은 개편이 있어야 하겠다. 외국에 있어서 예컨대 프랑스의 Conservatory나 이태리의 Academia Santa Cecilia 음악학교나 독일의 Stuttgart 음악학교의 학제를 보더라도 그 예술교육에 알맞는 제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국악교육을 위한 학제가 필히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 추세라 하였고 현재 대안이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나 지금 미국이나 서구제국과 이웃 일본 등지에서는 6, 3, 3, 4 학제에 대한 학제 비평과 개혁이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15년이란 긴 계획에 있어 나날이 변하는 교육진전을 고려할 때 한 번 더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

Hamburg 대학의 비교교육학교수 하우스만(G.Hausmann)은 독일 학제개혁(Schulreform)에서 「1단계는 일정교육 이념에서 학제개혁을 연역하는 단계, 2단계는 교육현장의 교육실험 또는 실험 학교를 기초로 한 학제개혁을 시행하는 단계, 제 3단계로서의 현 학제개혁은 국가교육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정책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고 하였다.

하우스만은 독일 학제개혁사를 전제로 한 것이나 한국의 학제개혁의 역사에 있어서는 제 1, 제2의 단계가 명확치 않으며 현 학제가 교육계획에 있어 인재개발과 국제적 교육경쟁에 부합한가를 고려한지 또한 별도학제를 인정해야 할 예술교육을 위해서도 제 3단계로서의 학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교원확보와 자질향상

현재 각급 학교의 국악을 교육시키는 음악교사는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에서는 전원이 양악을 전공 또는 이수한 교사들이다. 중등학교라 할지라도 서울대 국악과 출신은 헤아릴 수 있는 정도며 여타는 역시 양악위주의 교사로 되어 있다. 이런 현상으로는 국악교육의 정상화란 힘든 일이다.

따라서 교원확보와 교원자질이 국악교육처럼 허탈한 분야도 없다. 이번 계획에 이 문제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각 대학과 국악 교육기관에 단기교원양성제도를 시행하기 바란다.

③ 교육과정 개선

현 음악교육과정에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도록 국악이 받은 차지하도록 서서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보건체육교과에는 우리 나라 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놀이를 많이 반영시켜야 한다. 이런 반영이 있으므로 건전한 민족문화의 가치추구와 더불어 국민정서가 함양된다.

④ 사회교육체제강화

특히 국악은 사회교육의 문호를 개방시키므로 국악에 무관심하였던 사회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습득하므로써 국악의 고귀함을 인식할 것이다. 현재로는 시설의 부족과 교육주체의 보장예산 교육 과정 등의 재정비를 문화교육의 정책으로서 동 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는 Masscom의 교육활용과도 관계된다.

⑤ 해외교육의 발전

해외교육의 중대성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해외교포의 모국에 의한 교육문제는 점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생활문화로서의 언어, 민족음악은 민족적 의식 확립에 큰 지주가 된다. 우리 나라도 해마다 재일 교포 학생들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강습을 시키고 있다. 이때 국악도 공개되고 있으나 단순히 공연위주가 되어버리고마니 그들의 뇌리에 깊이 남을 수 없다. 반드시 국악교

육시간을 배치하여 이론과 실기에 입각한 입체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이후의 해외교육 방침은 보다 고차적인 계획이 요청된다.

또한 국비에 의한 문화순회공연도 해외교육의 큰 방편이며 각 대사관 영사관 등의 해외공관에는 문화교육급 홍보행정으로서 부설 국악예술단의 수시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주요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국악육성의 요향을 제언하였다. 이 교육계획에는 국악육성에 관한 연차적 개선이 당국에 의하여 필히 수립되어야 한다.

풍요의 사회를 지향하여 마련된 동 계획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터이지만 갑작스런 서구식 물질문명이나 산업화에의 지향은 건전한 국민사상의 확립과 기틀 없이는 위험하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는 국민정신의 각 영역에 이르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문화정책에 의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교육계획이 현 위치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문화재 및 홍보행정의 개선점

본 항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강습에 따르는 전수주체인 기능보유자의 교육강화와 피전수생인 선발기준을 검토하고 전수기구의 통일적 모색을 제언하고 홍보행정으로 Masscom의 관리를 요약하고자 한다.

가. 전수교육관리

국악전수교육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첫째 전수교육의 주체인 전 전수기능자의 교육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습실시를 해야하고,

둘째 이 전수교육에 있어서의 교안학습의 강화를 기하고,

셋째 피전수자의 적성도에 알맞는 선발을 행해져야한다.

① 전수강사의 양성

전수교육은 전수강사의 교육관과 교육방법의 결여로 정상적이고 현대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사실이다.

아무리 우수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그 재능의 개발을 올바르게 유도치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아동은 저능아가 되고 만다. 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각기의 재능을 최대로 개발 유도시키는데 있다.

특히나 전수교육은 그 예능적 자질을 충분히 개발하고 전수자의 소유한 예능을 피전수자에게 전달 습득케 하는데 있다. 교육주체인 전수강사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즉 영재이면서도 그 예능적 탁월한 기교를 효과적으로 전수치 못하는 전달과정인 학습지도의 결함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영재활용의 방법으로서 교육강습이 시급히 요청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교육합리화가 요청된다.

첫째 일정기간(단기 또는 장기 6개월)에 이르러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국악뿐만 아니라 여타 국악과 직접관계에 놓인 문화재전수에 있어서도 모든 전수강사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인식과 전승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 주무부인 문화공보부 소관으로 「문화재전수교육원」이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교육원장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임하고 강사는 사계의 권위자와 교육학 교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으로는 교양과목으로 문화재에 관한 개요와 교직과목으로 교육원리, 교육과정, 학습지도, 교육평가, 예술교육론 정도는 필히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특유한 예술교육에 수반되어야 할 교육적 요건, 즉 전수지도의 능력이라든지 교안

학습의 능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교육학의 이수 없이는 소기의 전수교육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교안학습의 강화

교안학습이란 학생지도계획을 말한다. 즉 일과표, 단원계획, 학습지도안을 가르킨다.

현 전수교육을 대개의 경우 이러한 것이 비치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교육이 힘들다. 이후로는 전수교육도 엄연한 교육이니만치 교안학습 즉 계획된 교안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수강사 스스로의 교안학습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일정기간은 당국에서 일괄적인 강령만이라도 적성하여 지도 조언해 주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지는 사후의 기록이며, 전수일지 자체도 좀더 세목별로 전수지도란. 교육내용, 평가들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일지만이라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점을 발견하여 앞으로의 전수에 개선점을 제시해야 한다.

③ 적성자(敵性者)선발

문화재란 탁월한 예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전수생의 선발에 있어서 각 분야에 알맞고 자질이 풍부한 적성자를 선발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에서 알맞은 적성자 선발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창조적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견기 위한 방법으로 길포드(Guilford, J.P)식이 있다.

이 방법에는 장기적 방법과 일시적 방법이 있다. 길포드는

발상(發想)의 유창성(속도, 동기유발의 강도(強度), 적절한 것의 수)

유연성(類軟性)(관점의 수, 넓이, 적응력)

독자성(출현확율은 적으나 적절한 것)

구체성과 명확성(기능, 부위, 행동, 목표와 사고의 깊이)

이상과 같은 점이 판명되도록 문제를 작성하여 Test를 하도록 하였다.

둘째 방법으로는 토란스(Torrance, E.P)식이 있다. 토란스는 길포드에게 배워 감수성(感受性)(결여되어 있는 정보의 찰지력(察知力))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추가하였다. 유아로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상에게 Test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시적 Test의 한계는 Motivation(철문)이 외적이라는 것과 시간적 제약에서 해결이 피상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것으로 피험자(被驗者)의 주체적 의욕의 크기와 그 방향지향 달성 방법에 관한 정보가 얻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 방법으로는 교사에 의한 관찰이나 Councelling이 실시되고 있다. 동년자나 동료사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를 지명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적확할 때가 많다.

국악이나 문화재 전수생의 선발도 이를 기준방법으로 하여 각종 예능 Test, 사회적, 정서적 성숙도의 득점과 평소 학습성적, 교사의 관찰결과를 감안하여 시행하려면 되리라 본다. 즉 교육장에서 일정기간에 공급되는 지식과 실시한 예능교육을 Test에 의하여 적성도 즉 재능을 평가 선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정된 전수생은 되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커다란 사유없이 갱질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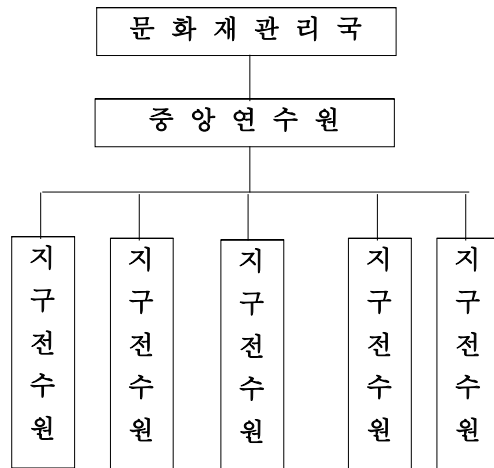
전수생의 갱질은 교육의 공백을 가져오기 쉬우며 바뀌는 원인도 선정당초에 있어서 적성자 선발기준의 부재에 기인한다. 이후로는 전수생 선정에는 당사자와 당국의 절충으로 위 선발방법에 의한 제도를 채택하여 선발의 합리화를 기해야 한다.

다음 전수교육은 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교육인 만큼 이 교육은 능률과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재교육에 의해야 한다. 기악이나 성악이나 무도에 있어 전통적 특종과 더늠을 원형 그대로 전승시키는 것이니, 소질 있는 전수생을 조기 발견하고 그 개성을 마음껏 신장시킬 수 있는 영재교육제도로 전화해야 한다.

나. 중앙 및 지구별 전수원 안

무형문화재로써 지정된 전승교육은 관리의 조직화와 바람직한 전승교육기구의 정비도 증대한 것이다. 현재 우임 산재해 있는 전수기구의 통합 및 계선(系線) 조직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행정관리의 계통과 명확한 전수현황을 알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둘째, 일원화된 관리로 적절한 경비를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어야하고
 셋째, 계획에 의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전수기구안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일선 관서인 문화재관리국 산하에 중앙전수원을 두고 중앙전수원 산하에 각 지구전수원을 둔다.

관리국은 중앙전수원에 대해 행정적 관리지시와 경비에 대한 재정감사권을 가지며 관리직원을 파견 근무케 한다.

중앙전수원은 지구전수원을 장악하고 중앙 및 지구전수원의 연중계획 및 월증행사를 작성 관리케 하며, 전수교육, 전수강사, 강습과 문화재전수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관장하며 지구전수원은 중앙전수원의 지도조언 아래 전수교육을 담당한다.

둘째 중앙전수원은 서울에 두며 지구전수원은 당해 문화재의 비교적 밀집된 연고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

중앙전수원의 지역관할을 서울 경기 이북5도를 관할하며, 지구전수원은 당해 시, 도청소재지로 한다. 도(道) 단위로 하면 계선조직은 편리하나 문화재 본래의지역성이 반영 안되며 전수자의 거주 직업 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밀집화시키되 밀집중심 인접 시 소재지가 타당하다.

현지구별문화재전수기구를보면아래표와같다

지구별 전수기구 현황

지 구	전 수 과 목	관 리 기 구	제 안 기 구
서울특별시	중요제례악 판소리 춘향가 가야금 산조	국립국악원 국악예술학교 국악예술학교	

지 구	전 수 과 목	관 리 기 구	제 안 기 구
서울특별시	거문고 산조 송 무 심 청 가 선소리 산타령 대 금 정 악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꼭두각시놀이 가 곡 대금 산조	국악예술학교 국악예술학교 국악예술학교 선소리 산타령 연구회 국립국악원 한국가면극연구회 한국가면극연구회 민속극 남사당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중앙전수원
부 산 충 무	동래야유회 통영오광대 승전무	부산민속예술보존회 충무무형문화재연구원	부산지구전수원 충무지구전수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전수기구는 통일성이 없다.

앞으로는 제안기구로서, 중앙전수원에는 서울 경기 이북5도 각지구 전수원은 부산지구, 충무지구, 진주지구, 안동지구, 광주지구, 전주지구, 부여지구별 전수원을 설정하고 또한 현 기구는 그 명칭을 ○○지구 무형문화재전수원으로 통일함이 관리상 편의하다. 국책에 의한 전수교육이니만큼 획일성 있는 이상과 같은 조직개편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다. 홍보관리

우리 나라 방송이 취급하고 있는 국악비중은 전체음악의 2%에 불과하고 국영인 중앙방송도 겨우 3%를 가리키고 있으니 어찌 국악의 국민에 의한 건전한 육성이 기할 수 있겠는가 극히 의심스럽다.

Masscom의 중요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말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국영방송마저 이렇게 저조한 비율로 취급되고 있음은 어딘가 문화행정의 실패가 크다. 민족주체의식과 건전한 국민정서의 육성을 위하여 국악은 필연적 첫 요건일 것이다. 이로 볼 때 방송관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대하며 국민정서에 끼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앞으로 국악육성은 문화행정으로 방송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적어도 국영일 경우에는 전체 음악 Program의 30%선은 유지되어야 한다. 반면에 국악의 고정으로서의 음악과 현대 국민생활정서에 알맞는 손질도 부수요건이 되겠다.

다행이 금년 들어서는 상당한 고전의 개선·증방(增放)이 되고 있으나 이에 음악적 면이 적고 연극위주로 된듯하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특히 교구시설이나 시청각을 전제로 한 방송교육은 국민교육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영방송은 앞서야 하며 관리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나머지 민영방송도 적어도 전체음악의 20%는 국악에 할당되어야 한다.

국악의 안맹자를 없애고 하루속히 범국민적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의 홍보관리는 차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맺 는 말

결론컨데 국악은 민족정서와 주체음악으로 범국가적 육성이 있어야겠다. 국민정서 없는 곳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여도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정신문화의 좌표 없이는 민족중흥이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문화예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구중에서도 전승예술로서의 국악이 주도적 위치에서 나가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전술한 획기적 교육개선과 장기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일상 국민생활에서 국악이 멀어져 가고 이방음악처럼 느끼게 되는경향도 생활 정서화 시키지 못한 국악육성의 결함에서 유래한다. 유행에 몰릴 듯 들어온 서구문화의 범람에 휘말려 한국의 image가 흐려지려는 이때에 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교육에서 시급히 국민 교육으로서의 국악육성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서생활과 정신문화의 참다운 정립과 세계 속의 한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국악육성은 국가적 대과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